

2024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

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2. 28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1. 지원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기업 위조상품 대응 지원
- 감독기관 : 특허청
- 주관기관 : 한국지식재산보호원

2. 지원 대상

- 신청자격 : 아래 ①·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

-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·중견·대기업

개인사업자 :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

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

중견기업 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

대기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
- ② 대상 국가에 유효한* 지식재산권(상표/디자인/특허 등)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우리기업

* 유효기간 만료, 출원중(출원신청서/확인서) 서류,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

3. 지원 내용

가. 대상 국가 및 사이트

○ 미주, 중국, 아세안,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

※ 대상 국가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수행기관에 따라 다르므로, [별첨] '수행기관별 지원 대상 국가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'을 확인하여야 함

나. 지원내용

○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모니터링, 차단신청 및 결과리포트 제공

【 차단 지원 세부내용 】

구분	세부내용	비고
모니터링	대상 국가·사이트 내 위조상품 식별 및 보유 지재권에 근거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등을 통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 제공	全过程 지원
차단신청	기업의 검증을 통해 차단 희망한 위조상품 URL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신고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	
결과리포트	차단신청 결과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자료 등 리포트 제공	

※ 모니터링, 차단신청, 결과리포트全过程를 지원하며, 부분지원은 제공하지 않음
다만, 지원 세부내용은 협약서(위조상품 차단 수행계획서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다. 지원금액 : 총 사업비의 80~40% 지원

구분	정부지원 비율	기업부담 비율	
		현금	현물
소기업	총 사업비의 80%	10%	10%
중기업	총 사업비의 70%	20%	10%
중견기업	총 사업비의 50%	30%	20%
대기업	총 사업비의 40%	40%	20%

※ 정부지원금 기준 초기지원(최대 30백만원)을 포함하여 최대 45백만원까지 지원(연장포함)

라. 수행기관 선정방식

- 지정방식 :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수행기관*과 함께 지원신청하고 동시심사를 통해 선정

※ 해외 K-브랜드 보호 포털(www.ip-navi.or.kr/kbrands/) > 알림/소식 > 공지사항을 통해 수행기관 현황 및 수행기관 소개자료 등 확인

마. 지원(협약)기간 : 협약 체결일부터 최소 4개월 ~ 최대 6개월

바. 지원연장

- 지원연장 대상 : 기 지원기업 중에서 위조상품 모니터링·차단 신청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지원연장 기간 : 최대 6개월 내외
 - 단, 전체 지원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협약 종료일은 11월 30일까지 예정
- 지원연장 금액 : 초기지원(최대 30백만원)을 포함하여 정부지원금* 최대 45백만원 지원

예시1 : 초기지원 6개월 정부지원금 30백만원일 경우, 지원연장 4개월 정부지원금 15백만원 신청가능
예시2 : 초기지원 4개월 정부지원금 15백만원일 경우, 지원연장 6개월 정부지원금 30백만원 신청가능

- 지원연장 방법 : 초기 지원 종료 1개월 전까지 지원연장을 신청하고,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및 통보

4. 사전 신청접수 및 선정 등

가. 신청기간 : '24. 2. 28.(수) ~ 3. 15.(금)

나. 신청방법

- 해외 K-브랜드 보호 포털 홈페이지(www.ip-navi.or.kr/kbrands/)에서 지원사업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제반 서류 접수

구분	제출서류명	필수	해당시	제출방법
동의서	지원사업 신청서	○		온라인입력
	홍보 참여 동의서(가점항목)		○	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○		
기본신청	기업현황 및 신청현황	○		온라인입력
	제반서류 제출	○		파일 업로드
	1.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→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 수령 후 제출	○		
	2. 사업자등록증	○		
	3. 중소(중견)기업 확인서		○	
	4. 위조상품 판단 보고서		○	
지식재산 보유현황	지식재산 보유현황 작성 및 등록증 제출	○		온라인입력, 파일 업로드
위조상품 URL	위조상품 판매 게시글(URL)	○		파일 업로드
정·가품 비교1	정·가품 비교대조표, 로고, 제품외관 및 포장 비교	○		온라인입력, 파일 업로드
정·가품 비교2	정품인증수단, 공식홈페이지 이미지도용		○	

※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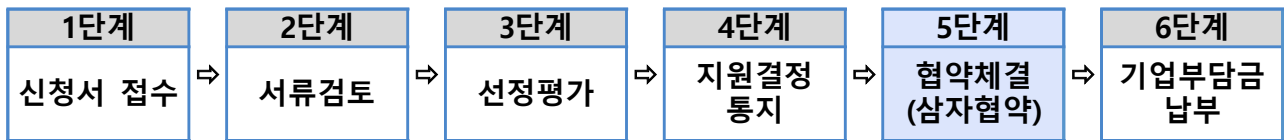
※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탈락

※ 홈페이지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은 [붙임 2] 파일 참고

첨부파일	[참고1] 선정평가 및 제출자료 가이드
	[참고2]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양식

5. 추진일정

【 지원기업 선정 절차 】



【 지원사업 주요 절차 】

신청서 접수 (‘24.2.28.(수) - 3.15.(금))	▶ 홈페이지(www.ip-navi.or.kr/kbrands/)를 통한 신청 및 제반서류 접수 ▶ 접수 후 접수완료 자동메일 발송
↓	
서류검토	▶ 신청기업 제출 서류의 사실유무, 하자유무 검토 ▶ 서류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내 추가제출을 완료해야 함
↓	
선정평가	▶ 수행기관 + 신청기업 발표(수행계획, 협약금액 및 목표치 산출근거 등) ▶ 자격 평가(1차) → 적합성 평가(2차) [별표1, 2]를 기준으로 평가
↓	
지원결정 통지	▶ 최종 지원결정 통지 및 협약체결 준비
↓	
협약체결 등 (‘24년 4월 초)	▶ 삼자협약(보호원-지원기업-수행기관) 체결 ▶ 기업부담금 납부 : 협약체결 후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납부
↓	
차단지원	▶ 협약 체결일부터 모니터링·차단신청 지원
↓	
월간보고	▶ 위조상품 차단 추진현황 보고 및 검토
↓	
최종보고 (협약종료 10일 전)	▶ 위조상품 유통차단 최종결과물 제출 및 완료보고
↓	
정부지원금 지급	▶ 최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사업종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

※ 상기 일정은 보호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제출서류 보완요청 미이행 시 서류심사 중단 가능(사업 신청서 반려)

※ 협약종료 1개월 전 지원연장 신청 시,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및 통보

6. 선정 방법

가.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

구분	평가기준	비고
1차 자격평가	① 국내에 사업자가 등록된 개인, 중소기업, 대기업	2개 모두 충족必 탈락시 2차 평가 미 실시
	② 대상 국가 유효한 지재권 1개 이상 보유	
2차 적합성 평가	필요성, 시급성 등을 고려한 지원 적합성 평가 실시	평가기준 및 평가표 [별표1, 2] 참고

- 필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서면심사 진행
- 1차 자격평가 합격기업 대상 2차 평가 실시

나. 기업선정 : 2차 평가결과 70점 이상(100점 만점) 기업 대상 최종 선정

- 2차 평가 결과 70점 이상 획득기업 중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
- ※ 한 개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 위조상품 유통 심각 정도 등에 따라 선정

7. 유의사항(필독)

가. 기업 지원 불가 사유

- ① 휴·폐업 기업
-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(단,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)
-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, 지점, 사무소이거나 법인인 경우
-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 중소기업 또는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
-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·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

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(단,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)

-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·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
-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
나. 수행기관 과제 수행 불가 등 사유

- ①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%를 초과하는 경우
- ②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(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)
- ③ 신청일 기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찰·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

다. 기타 유의사항

- (국세·지방세 납입)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
 - * 국세·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처리
- (기업부담 현금 납부) 기업이 협약체결 후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간 내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
 - * 천재지변, 사변, 화재 등의 정당한 사유로 기간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,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 연장 가능
- (정부지원금 조정) 수행기관의 수행결과 최종평가에 따라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낮은 경우 정부지원금에 한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음
 - * 평가는 정량 및 정성평가로 진행하며, 감액 시에도 지원기업 부담금은 유지

- (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)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
- (부정행위 등 제재조치)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 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
-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

※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, 부정신청,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, 부당이득 반환,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, 정부기관(국회, 감사원, 특허청, 변리사징계위원회 등)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

※ 공공재정환수법(2020.1.1. 시행)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부정 이익 환수, 제재 부과금 부과(최대 5배),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

8. 문의 및 대응상담
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-브랜드보호실 www.koipa.re.kr
 - 주 소 : (06133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
 - 전 화 : 02-6196-2052, 2055
 - 이메일 : global@koipa.re.kr
- ※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 상담 상시 지원